#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 호주,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입 요건 발표 (2023년 12월부터 수입 시작)



수입통관

이슈 바로가기 🕨

- 호주 농림수산부는 한국 동식물검역원(APQA)에서 제출한 한국산 온실 재배 참외 및 멜론의 판매 허용 요청을 받아들여 생물 보안 위험(biosecurity)을 평가하고, 2023년 2월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 이를 바탕으로 호주 농림부는 한국산 온실 재배 참외 및 멜론의 수입 가능 시기, 위생 검역 기준 등 수입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2023년 6월 한국과 최종 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수입을 허용함
- 주요내용
- 1) 수입 대상 품목
- 온실 재배 한국산 참외(Cucumis melo var. makuwa)
- 온실 재배 한국산 멜론(Cucumis melo var. cantalupo)
- 2) 대상품목의 요건
- 신선 제품에 해당함
- 껍질, 과육 및 종자로 구성된 과일 전체를 의미함
-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소매용 제품으로 수입되어야 함
- 표준 상업 관행 및 포장 절차를 준수하여 한국에서 재배되어야 함
- 식물 위생 검역 요건을 준수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음
- 3) 수입 검역 요건(주요 내용)
- ①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호주로 수입 가능
- 이는 검역 해충(호박과실파리)의 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 기간 (Seasonal Area Freedom Period)을 설정함
- ②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Import Permit) 필요(BICON에서 수입 허가 신청 접수)
- ③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식물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운영 절차와 필수 해충 위험 관리 조치에 따라 제품이 소싱, 생산 및 수출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④ 이를 입증하는 추가 선언 문구를 식물 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에 표시해야 함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fruit from Korea: biosecurity import requirements final report, 2023,02

#### 뉴질랜드, 식품 수입업자의 의무를 강조한 신규 식품 수입 요건 발효(2023년 8월 1일 부터)

-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는 뉴질랜드로 식품을 수입 시 수입업자의 강화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 및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요건(Requirements for Registered Food Importers and Imported Food for Sale)」이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을 공지함
- 주요 내용(개정 대상 성분 및 내용,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품목과 관련된 것에 한정)
- 1) 적용 대상: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 2) 식품 수입업자의 준수 요건
- 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판매 목적의 식품은 등록된 수입 식품업자를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화물은 식품 수입업자 등록을 마칠 때까지 수입 통관이 보류됨
- ②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는 안전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 및 판매용 수입 식품의 요건」에서 구체화된 4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안전성 및 적합성 평가 수행: 수입 식품의 정보, 식품 용도 및 대상 소비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위험 등 필수 평가 항목과 평가 정보의 특징 등을 구체화함
- 안전한 운송 및 보관:
  - 수입 식품의 운송 및 보관 시 준수 사항, 보관 장소의 준수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적절한 기록 보관: 수입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수입 식품의 정보 유형과 보관 방식 등을 구체화함
- 문제 상황에 대비한 제품 회수(리콜) 계획 수립:
  리콜 절차 및 리콜 기록 보관 요건, 정기적인 모의 리콜 수행 필요성을 명시함
- 3) 발효일 및 위반시 조치사항
- 발효일: 2023년 8월 1일
- 위반시 조치사항: 수입업체는 최대 \$500,000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최대 \$100,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 \*

трт



출처: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New food safety rules for registered food importers, 2023.08.02

#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 뉴스레터

TBT

이슈 바로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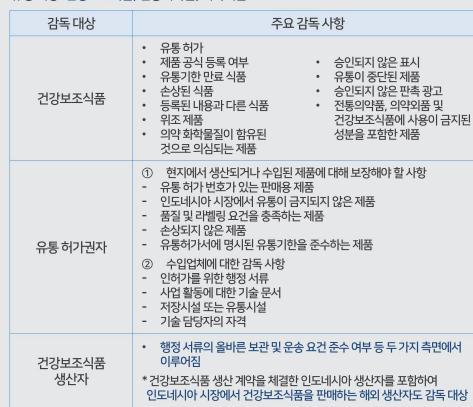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을 감독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 2023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이하 식약청)은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23년 제16호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관리 감독」을 발표함
- 주요 내용(규정 대상 및 내용)
- 규정 대상: 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 위반 시 조치사항: 경고, 해당 제품 유통 중단, 제품 폐기, 건강보조식품 유통의 행정 승인 절차 중단, 건강보조식품의 행정 승인 취소와 같은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16 TAHUN 2023

#### 중국, 「차 포장재의 품질에 대한 국가 감독 및 현장 검사 수행 규칙」 발표

- 2023년 7월 2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 관리 잠정 방법」에 따라「차 포장재의 품질에 대한 국가 감독 및 현장 검사 수행 규칙」을 편성하고 공고하여 차 포장 제품의 무작위 검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 주요내용
- 1) 규제 적용 방식
- 검사 후 검사 항목을 모두 합격할 경우: 합격 판정
- 검사 항목 중 하나 이상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 판정
- GB 4789.1-2016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미생물학검사 총칙」에 따라 미생물 지표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미실시
- GB 23350 「식품과대포장 제한 요구 식품 및 화장품」에 따라 과대포장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증거는 지역 시장감독관리 부서로 이송 및 처리
- 2) 주요규제 내용
- 무작위 샘플링 방법:대상 생산자의 입고 제품 및 보조 원자재 창고 내에서 무작위 추출
- 차 포장재 유형별 샘플링 방식을 다르게 적용함(\*해당 심층기사 내 표 참고)
- 창고에 있는 차 제품: 과대 포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개 상자는 검사 샘플, 1개 상자는 예비 샘플로 2개 상자를 추출 검사
- 3) 시행일: **2023년 7월 27일**



TBT



查村:市场监督管理总局,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茶叶包装产品质量国家监督抽查实施细则的公告(2023年第29号),2023.07.27